

부속서 3-나
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

1. 한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,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제 3.12 조에 따라 설치된다.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.

2.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.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1 주년이 되는 날에 회합하며, 그 후 최소 매년 1 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.

3.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.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할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. 위원회는 또한 원산지 최종상품의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.